

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
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11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

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73호로 2023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가 꽃과 정원이 가득한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정원문화의 육성, 정원도시의 조성 등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, 확산 지원, 마을정원사 양성 등(안 제7조~제10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민간교육과정의 위탁 등(안 제11조~제14조)
- 마. 지역거점형 정원자원사업, 정원박람회 육성, 개최 등(안 제15조~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10. 12.~ 11. 1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가 꽃과 정원이 가득한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이고 2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, 정원문화의 육성, 정원도시의 조성, 구민 복지의 증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서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과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원칙을 세웠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 정원 조성, 구민 대상 교육, 친환경 캠페인 등의 활동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해당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마을정원사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는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10조에 따라 양성한 마을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5조에서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 더불어 해당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16조에서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정원박람회의 육성·개최·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꽃과 정원이 가득한 친환경 정원문화도시로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심속에서 생활하는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정원 문화조성 등을 위해서는 유휴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주차장,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설립에 필요한 유휴지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가.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

나.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

다. 화목원·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

라.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시설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2. “수목유전자원”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(자생·재배 식물을 포함한다)과 그 식물의 종자·조직·세포·화분(花粉)·포자(孢子)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·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.

3. “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”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희귀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·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5. “특산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6. “정원산업”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·유통하거나 이에 필

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7. “정원치유”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·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
제18조의6(정원의 운영·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·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·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13(박람회 등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